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2월 13일, 이용우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2.20.)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2.23.) 상정,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용우 의원)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14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장의2).

이와 더불어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7조).

주요내용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함(안 제7조).

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함(안 제14조).

다. 국민투표 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준용함(제48조의2)

신설).

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2.20.)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범수)

없음

6. 찬반토론의 요지

-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 사례와 같이 국민투표의 투표시간을 현행보다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위성곤의원).
- 헌법 제130조제2항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현재 확인 가능한 투표권자의 범위인 투표인명부 및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윤건

영의원).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